

[별표 제3호] 국외여비 지급표

<개정 1997. 4. 10., 개정 1998. 10. 1., 2000. 8. 24., 2004. 3. 31., 2006. 4. 19., 2006. 12. 19., 2012. 7. 22., 2012. 12. 7., 2013. 7. 24., 2014. 7. 9., 2014. 12. 11., 2015. 9. 7., 2019. 10. 21., 2023. 7. 18.>

## 국외여비 지급표

(단위 : 미불화)

직 급 (직 책)	등 급	일 비	숙 박 비	식 비
임 원 부설기관장	가	50	실비(상한액: 389)	160
	나	50	실비(상한액: 289)	117
	다	50	실비(상한액: 215)	87
	라	50	실비(상한액: 161)	73
부총장 학·처장급	가	40	실비(상한액: 282)	133
	나	40	실비(상한액: 207)	99
	다	40	실비(상한액: 162)	72
	라	40	실비(상한액: 108)	61
교수, 부교수 책 임 급	가	35	실비(상한액: 223)	107
	나	35	실비(상한액: 160)	78
	다	35	실비(상한액: 130)	58
	라	35	실비(상한액: 85)	49
조 교 수, 선임급 이하	가	30	실비(상한액: 176)	81
	나	30	실비(상한액: 137)	59
	다	30	실비(상한액: 106)	44
	라	30	실비(상한액: 81)	37

※ 제10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, 학술회의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개최지역의 숙박시설(호텔 등)을 이용할 때에는 숙박비의 실비(전액)를 정산할 수 있다. 다만, 실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하되 기지급한 숙박비와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한다.

※ 단, 해외(연구연가 등)에서 한국으로 출장 시에는 별표 제1호 국내여비 정액표에 따라 일비, 숙박비, 식비를 지급한다.

※ 항공료

구 분	여비
임 원	F
부설기관장	B
부총장, 학·처장급	B
교수, 부교수	B
조교수 이하, 책임급 이하	E

- F : First Class, B : Business Class, E : Economy Class

- \* 항공운임이 4개등급 이상으로 구분될 경우, B 미만을 E로 본다. 다만 B-E 사이의 항공운임(Premium Economy)을 이용할 경우, 동일항공사 E 좌석이 없거나, 타항공사 E 항공운임보다 비용이 절감됨을 증빙하여야 한다.
- \* 항공운임에 무료수하물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은 항공사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무 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하물 비용을 운임에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, 세부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.
- \* 석좌교수, 특훈교수에 대한 여비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.

(단위 : 미불화)

직 급	등 급	일 비	숙박비	식 비
석좌교수, 특훈교수	가	45	실비(상한액: 261)	144
	나	45	실비(상한액: 198)	105
	다	45	실비(상한액: 158)	78
	라	45	실비(상한액: 130)	66

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.

가. 가등급: 도쿄, 뉴욕, 런던, 로스엔젤레스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워싱턴D.C., 파리, 홍콩, 제네바, 싱가포르

나. 나등급

(1)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베이징, 사모아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, 일본, 카자흐스탄, 쿡제도, 타이완, 파푸아뉴기니

(2) 남·북아메리카주: 멕시코, 미국, 바베이도스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, 세인트키츠네비스, 아이티, 앤티가바부다, 자메이카, 캐나다, 트리니다드토바고

(3) 유럽주: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사이프러스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포르투갈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

(4) 중동·아프리카주: 가나, 가봉, 남수단, 남아프리카공화국, 리비아, 모로코, 바레인, 사우디아라비아, 세이셸, 아랍에미리트, 앙골라, 에티오피아, 오만, 우간다, 이스라엘, 이집트, 적도기니, 카타르, 코트디부아르, 콩고민주공화국, 쿠웨이트

다. 다등급

(1)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뉴질랜드, 니우에, 마셜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

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인도네시아, 중국, 키르기스공화국, 타이, 터키, 투르크메니스탄, 파키스탄, 피지

(2) 남·북아메리카주: 가이아나, 과테말라, 도미니카공화국, 베네수엘라, 벨리즈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에콰도르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파나마

(3) 유럽주: 라트비아, 루마니아, 리투아니아, 몬테네그로, 불가리아, 세르비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에스토니아, 우크라이나, 체코, 크로아티아, 폴란드

(4) 중동·아프리카주: 기니, 나이지리아,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레바논, 르완다, 말리, 모리셔스, 모잠비크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상투메프린시페, 세네갈, 수단, 스와질란드, 시에라리온, 아프가니스탄, 알제리, 요르단, 이라크, 잠비아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카메룬, 케냐, 탄자니아

라. 라등급

(1) 아시아주·오세아니아주: 네팔, 동티모르, 라오스, 몽골, 미얀마, 미크로네시아, 베트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캄보디아, 타지키스탄, 통가, 필리핀

(2) 남·북아메리카주: 니카라과, 볼리비아, 수리남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콜롬비아, 파라과이, 페루

(3) 유럽주: 마케도니아, 몰도바, 벨라루스,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, 알바니아

(4) 중동·아프리카주: 감비아, 기니비사우, 나미비아, 레소토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모리타니, 소말리아, 예멘, 이란, 짐바브웨, 튀니지

2. 1.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